

제4차산업경제위원회
2013.12.10(화)14:00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권기수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11월 27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12월 04일

3. 제안 이유

-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·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예 따라 용어를 개정함은 물론,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용어 중 '아파트형공장' → '지식산업센터'로 변경(안 제2조, 안 제6조, 안 제9조)

나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13조의2)

다.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정비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운용중인 조례가 상위법령 개정 에 따라 용어를 개정함은 물론,
-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 은 타당함.